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예선"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타 청 소속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득하여 입·출항 선박의 이·접안 지원 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

② "예선운영협의회"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된 대산항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

③ "예선사용자"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④ "계류시설"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정박지와 조선소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예선업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대산항 예선관리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태안항 및 당진화력항만시설은 대산항 예선업의 단일권역으로서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4조(예선사용 절차 등) ① 예선사용자와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예선사용신청 및 지정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전화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예선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1. 예선사용자는 작업 5시간 전까지 예선 사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1시간 전까지 하여야 한다.
2. 예선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한 예선사용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가시에는 그 사유를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예선업자는 작업완료 후 그 실적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도선사가 예선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성실히 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예선의 자율사용 신고) ① 「업무처리요령」 제6조3항에 의하여 본선의 선장 또는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이 입항 또는 출항 전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예선자율사용신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선을 자율사용한 선박의 선장이 사고로 항만시설을 파손, 훼손 등 피해를 가했을 경우, 청장은 당해 선장이 승선

한 선박에 대하여 일정기간 예선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예선사용의무) ① 대산항에 입·출항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

·접안 하고자 하는 총톤수 1,500톤(위험물운송선박은 총톤수 1,000톤)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선사용이 필요치 않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보호 및 선박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1,500톤(위험물운송선박은 총톤수 1,000톤)미만 선박이라도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액화석유가스(LPG) 및 이와 유사한 가연성물질을 적재한 선박의 이·접안 때에는 동 적재물질에 의한 화재 시 소화에 적합한 소방 설비를 갖춘 예선 1척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예선사용기준) ① 대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 및 해상상태, 이·접안 선박의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등을 감안하여 청장은 예선의 증·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② 선장 또는 도선사 및 항만 시설주는 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되, 제1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선사용 마력과 척수를 증가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선대상 선박 중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도선사가 보조장비가 제대

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선박의 경우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한다.

④ 동일한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선하여 동일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예선을 사용기준 마력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대상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예선의 타항 지원) ① 「업무처리요령」 제7조에 따라 타 항 지원을 위한 예선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급증하여 해당항만 등록예선으로 적기에 예선지원이 어려운 경우
2. 예선업자가 해당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해당항만의 사정으로 사실상 예선의 운항 또는 지원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타 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2호 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예선의 대기장소) ① 대산항의 예선 대기장소는 대산항 관리부두 부잔교로 하며, 대산항 예선 대기장소 수용능력은 최대 24척으로 한다.

② 예선업자 및 예선선장은 선내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선박의 수리 등 기타사유로 일정기간 항내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 및 대산항 예선운영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예선의 우선사용) 기상에 의한 표류, 해양사고 등 현재 상황으로 보아 예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선

업자는 예선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예선의 예방력시험) ① 청장이 「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방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선사용자에 의하여 2회 이상 예방력에 문제가 제기된 예선
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② 예선업자는 제1항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해당 예선의 검사지정일에 예방력시험을 받아야 하며, 예선에 대한 예방력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실시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시. 다만, 타 항만으로 변경 등록하는 예선은 제2호의 예방력 시험주기와 연계한다.
2. 선령 25년 미만 : 매 5년마다
3. 선령 25년 이상 : 매 3년마다

제12조(예선의 감독) ① 예선업자(또는 예선선장)는 입·출항 선박 이·접안 지원 외에는 타 용도로 예선을 사용하지 못한다.(단, 인명 및 선박구조, 방재작업, 기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예선업자는 매일 당직예선을 편성하여야 하며, 당직예선으로 지정된 예선은 긴급 상황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예선 대기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예선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예선운영협의회장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대산지부장 및 예선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삭 제

부칙 <제2015-7호,2015.2.11.>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2호,2015.9.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40호,2019.9.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23호, 2020.06.1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34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산항 예선사용기준

이·접안선박 총톤수(G/T)	예 선 사 용 기 준			
	사용마력급	사용척수	총사용마력	
1,500미만	1,000마력급	1척	2,000마력이하	
1,500이상 3,000미만	1,000마력급	2척	2,400마력이상	
3,000이상 5,000미만	1,000마력급 2,000마력급	1척 1척	3,700마력이상	
5,000이상 10,000미만	1,000마력급 3,000마력급	1척 1척	5,600마력이상	
10,000이상 40,000미만	3,000마력급	2척	7,200마력이상	
40,000이상 70,000미만	3,000마력급	3척	10,800마력이상	
70,000이상 100,000미만	3,000마력급 4,000마력급	3척 1척	15,300마력이상	
100,000이상 130,000미만	3,000마력급 4,000마력급	3척 2척	19,800마력이상	
130,000이상 160,000미만	3,000마력급 4,000마력급	3척 3척	24,300마력이상	
160,000이상	3,000마력급 4,000마력급	2척 4척	26,000마력이상	
※ ① 예선마력 구분 - 1,000마력미만 : 999마력이하 - 1,000마력급 : 1,000마력 ~ 1,999마력 - 2,000마력급 : 2,000마력 ~ 2,999마력 - 3,000마력급 : 3,000마력 ~ 3,999마력 - 4,000마력급 : 4,000마력 ~ 4,999마력 ② VLCC 선박이 만선 접·이안시 일정기간 예선 사용마력을 상호 협의하여 확대 적용한다.				

대산항 국가부두 예선사용기준

이·접안선박 총톤수(G/T)	예 선 사 용 기 준			비 고
	사용마력급	사용척수 (척)	총사용마력	
3,000미만	1,000마력급 또는 2,000마력급	2 또는 1	2,000마력	
3,000이상 5,000미만	1,000마력급	2	3,000마력	
5,000이상 10,000미만	2,000마력급	1 1	4,600마력	
10,000이상 20,000미만	2,000마력급 3,000마력급	1 1	5,800마력	
20,000이상 30,000미만	3,000마력급	2	7,000마력	
30,000이상 50,000미만	4,000마력급	2	8,000마력이상	
※ ① 예선마력 구분 - 1,000마력미만 : 999마력이하 - 1,000마력급 : 1,000마력 ~ 1,999마력 - 2,000마력급 : 2,000마력 ~ 2,999마력 - 3,000마력급 : 3,000마력 ~ 3,999마력 - 4,000마력급 : 4,000마력 ~ 4,999마력				

(별지 1호)

예 선 자 율 사 용 신 고 서 (제5조 관련)						
선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선원수첩번호			해기사면허번호		
선박제원	선 명			호 출 부 호		
	총 톤 수			국 적		
	소 유 자			선 종		
입출항사실	입 항 일					
	출 항 일					
	입출항 회수	회 이 상				
승 선 일 시						
첨 부						
예선척수	대산청 기준	마력 1척				
		마력 1척				
	자율사용코자 하는 예선	마력 척				
		마력 척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2항 및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5조에 의하여 본선 이·접안시 예선을 본선의 선장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별지 2호)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제8조 관련)

신 청 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임시변경	선 명	선박번호	총톤수	주기관마력
예 선				
신청사항	지원항만			
	변경기간			
	변경사유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7조 제3항 및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신청합니다.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 4항 및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8조에 따 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승인합 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승인조건 : 대산항 예선 부족시(타항예선 지원 발생시)즉시 회항하여 예선업무에 지원해야 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별지 3호)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4.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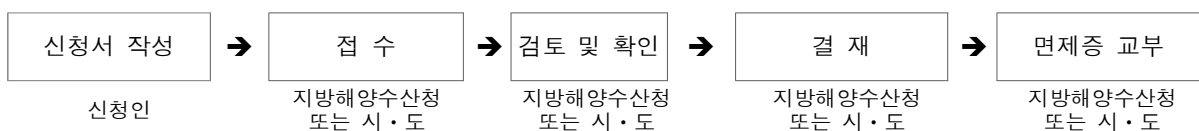
예선사용 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면제 번호	제 호					
선장	성명		생년월일			
	선원수첩 번호		해기사면허 번호			
선박 제원 (諸元)	선명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총톤수		국적			
	소유자		용도			
입항 · 출항 사실	선명					
	총톤수					
	입항일	. . .	. . .	. . .	. . .	. . .
	출항일	. . .	. . .	. . .	. . .	. . .
	입항·출항 횟수	회	담당공무원 확인	(서명 또는 인)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선 사용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선 사용을 면제합니다. ※ 면제 조건 : ※ 유효기간 : 년 월 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첨부서류	예선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선료 청구서, 예선사용증 명, 항만별 예선조합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	수수료
기 타	입항·출항 사실이 8회 이상인 경우는 입항·출항 사실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함	없음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